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09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윤준병 · 이학영 · 박희승
이언주 · 박용갑 · 이용우
이춘석 · 최혁진 · 송옥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이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자</u>
	<u>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이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한 자</u>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까지에--- ----- ----- -----.